

2013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

□ '14년도 정부R&D 예산편성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(환경조성·사육시설 포함, 붙임2 참조)를 대상으로 함

○ 사업분류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

구분	심의대상	심의제의 대상
순수연구 개발사업 ¹⁾	○ 정부R&D 예산편성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장비 (환경조성·사육시설 포함) ※ '14년 정부R&D예산으로 구축 하려는 장비	○ '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(본심의)' 자료제출 시점(5월말) 기준으로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이 완료되지 않아, '14년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- '14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신규과제 중 상향식 (Bottom Up)* 제안과제로 구축하는 연구장비 - '14년 기준으로 계속과제에 해당하지만, '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(본심의)' 자료제출 시점(5월말)에 과제의 선정 및 1차년도 협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향식 제안과제로 구축하는 연구장비
시설장비 구축사업 ²⁾		
연구기관 지원사업 ³⁾		

* 연구목표 범위 내에서 자유공모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(연구자가 연구아이디어를 제안하여 R&D 계획을 결정)

※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신청하는 장비는 해당기관 내부의 장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장비에 한해 연구장비예산심의
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

- 1)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
- 2) 자본적 지출(토지·건물 등의 시설과 대형기기·장비 등의 구축) 사업
- 3) 국공립 연구기관, 부처 직할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(출연금)과 부·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
 ('000연구원 주요사업비', '000연구원 기본경비' 등)

< 기타 심의대상 기준 >

- 부분품(모듈)⁴⁾을 구입하여 조립하는 경우, 부분품의 개별 금액은 1억원 미만이라도 완제품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
-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 장비의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도 전체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
- 소유권 취득 없이 일정기간 임대만 하는 경우에 해당년도 신청예산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
- 일정기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자산으로 취득하거나, 일정기간 분할납부하여 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 신청예산이 1억원 미만이라도 총 납부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이 되며 이때 심의는 납부 첫 해에만 실시함
-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총액 1억원 이상인 장비 중 정부출연금 1억원 이상 투입되거나, 정부출연금 비중이 50% 이상인 장비가 심의대상이므로,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미만으로 투입된 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
 - 매칭펀드로 장비를 구축할 때, 예를 들어 장비구축비 10억원 중 정부출연금 2억원, 민간기관 부담금 8억원인 경우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 투입되므로 심의대상에 해당하며, 장비구축비 1억원 중 정부출연금 6천만원, 민간기관 부담금 4천만원인 경우 정부출연금 비중이 50% 이상이므로 심의대상에 해당함
- 기구축된 장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 장비의 일부분을 구매하여 교체해야할 경우, 부품 및 보조장치 교체는 주장비의 유지보수 개념이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부대장비의 교체는 주장비의 성능향상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심의대상에 해당함
-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이며, 장비와 상관 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
- 예산신청년도 이전에 이미 계약(분할상환, 임대 등)을 체결하여 잔금지급을 위한 예산을 신청한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
- 대당 단가가 1억원 미만인 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하여 총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
-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,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(外注)하는 장비는 구축비용이 1억원 이상이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됨. 단, 1억원 이상의 도입부품이 있는 경우, 해당부품은 심의대상임

4) 하나의 완제품 연구장비를 구성하는 개별의 날개부품을 의미함